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 부서명 | 페이지 |
|--------------------------------|------------|-----|
|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일자리 진흥과 | 1 |

(2015. 9. 3)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1. 안 건 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8월 21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화)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6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 제안이유 >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의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확산을 통해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제2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제3조)

- “별 표” 참조

※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 37개 (2015. 8월 현재)

다. 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라.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제6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

마.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제10조)

○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

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둠(안 제12조)

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둠(안 제13조)

자.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제15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 참고사항 >

1. 예산조치 사항

○ 2015년 본예산에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000만원 반영

※ 매년 연회비 : 1,000만원 예산 반영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 경비 발생 시 공동경비 추가 부담해야 됨.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검토의견]

- 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3.20일 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2015. 8월 현재 전국기초자치단체 37개(서울시 12개)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협의회 주요 내용
 - 가. 협의회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 나. 구성기관 : 37개 기초자치단체
 - 다. 구성형태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회장 1, 수석부회장 1,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 분과위원회 : 사회적·마을기업분과, 자활기업분과, 협동조합분과
 - 실무협의회 : 중앙실무협의회, 권역별 실무협의회
 - 주요 협의사항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등
 - 라. 동 규약안은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협의회 기능)에서는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중장기 발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 안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에서는 협의회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사람,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중이거나 재직 한 사람, 학계 및 시민 단체 전문가로 구성함.
- 안 제13조(실무협의회 등)에서는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중앙실무협의회는 권역별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함.
- 안 제14조 ~ 15조(수당, 경비부담 등)에서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공동사무와 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2012. 08. 31 : 협의회 설립 8개 자치단체 공동제안
 - ※ 완주군,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시흥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 2012. 09. 04 : 협의회 설립 제안(성북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 2012. 10. 18 : 참여 기초자치단체 확정 (30개 지자체)
 - ※ 서울·인천·경기 17개, 강원권 1개, 충청권 4개, 호남권 5개, 경상권 3개
- 2012. 11. 09 : 협의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준비모임

- 규약안 의견수렴 및 확정
- 임원 구성안 및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 논의

○ 2013. 3. 20 : 협의회 설립

- 사무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서울사회혁신파크 내
- 가입단체 :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

【서울(12) :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인천(3), 광주(3), 강원(1), 대전(2), 충남(3), 경기(8), 전북(2), 전남(3)】

○ 2015. 9월 ~ : 협의회 참여 시·구 지역의회 의결 및 고시

○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 최근 사회가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국가 및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정책에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학교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체험교육 사업 등 특화사업도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시에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한 이래 2000년 자활공동체,

2007년 사회적기업,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순차적으로 등장 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1,35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 1,249개의 마을기업, 7,208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마포구도 38개의 사회적기업, 11개의 마을기업, 145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례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성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서 최근에는 관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더 많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전국의 37개 자치단체가 협의회 회원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사회적 경제 현장의 생생한 사회경제적 기업 활성화 경험과 노하우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해 공동 건의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

○ 서울시 및 8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자치구 여건상 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육성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조례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2015년도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000만원을 본 예산에 책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마포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194개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고 활성화 되어있으며 특히 홍대앞이 이번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예비 특구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마포구와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이 의욕적으로 9월부터 민·관 협력으로 ‘문화예술 관광·체험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홍대의 문화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홍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을기업인 (가)홍대앞 문화관광여행사 설립이 추진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마포구가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전국에서 최고 많지만 일부 사회적경제적 기업의 경우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구로부터 인건비 등 자금지원만 보조받고 제품개발이나 판매에는 소홀하여 자금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는 부실 사회적경제적 기업이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이번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게되면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및 타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험이나 성공사례 등 신속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으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그 동안 투입된 예산으로 어느정도 제품개발이나 상품 판매실적 등 성과가 있는 지 점검해 보고 점검결과 경쟁력있는 우수기업에게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실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별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 지 역 | 지 방 자 치 단 체 명 | 비 고 |
|-----|--|-----|
| 서 울 |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 12 |
| 인 천 | 남구, 남동구, 부평구 | 3 |
| 광 주 | 남구, 서 구, 광산구 | 3 |
| 대 전 | 서구, 유성구 | 2 |
| 경 기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 8 |
| 강 원 | 속초시 | 1 |
| 충 남 |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 3 |
| 전 북 | 전주시, 완주군 | 2 |
| 전 남 | 여수시, 담양군, 해남군 | 3 |

관 계 법 규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 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 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 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 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의 규약을 변경하 거나 협의회 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 조합 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 자치단체 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 조합 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 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 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 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장 의 권한) ① 지방자치 단체 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 체 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

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참 고 자 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임원 및 회원구성 현황

□ 협의회 임원 현황

| 구 분 | 1기(2013.3 ~ 2014.8) | 2기(2014. 9 ~) |
|---------|---|--|
| 회 장 |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 수석부회장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
| 부 회 장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 |
| 감 사 |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
| 사 무 총 장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시 제공되는 지원분야

- 1. 회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적경제 관련 공무원대상 교육기회 제공**
- 2.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정책자문제공**
- 3. 지방정부협의회가 수행하는 연구성과물 제공**
- 4. 협의회 협력 언론사를 통한 우수사례 소개 및 홍보**
- 5. 교차구매 등 회원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판매 지원**
- 6.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 기회 제공**
- 7. 국내외 사회적경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탐방참여기회 제공**
- 8. 주민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 제공**
- 9. 사회적경제 조례제정 등 입법작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